

## 예금거래 기본약관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 1 조 적용범위 ~ 제 20 조 예금의 비밀보장 &lt;생 략&gt;</p> <p><b>제 21 조 약관의 변경</b></p> <p>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약관을 <u>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.</u>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제 1 항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중 3개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.</u></p> <p>1.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(E-mail) 또는 휴대전화(SMS, MMS)에 의한 <u>통지</u></p> <p>2. &lt;신설&gt;</p> <p>2. 거래통장에 표기</p> <p>3. 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&lt;신설&gt;</p> <p>4.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</p> <p>5. 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(애플슈 등)에 의한 통지</p> <p>③ &lt;신설&gt;</p>	<p>제 1 조 ~ 제 20 조 &lt;좌 동&gt;</p> <p><b>제 21 조 약관의 변경</b></p> <p>① 은행이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, 거치식·적립식예금약관 <u>(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“약관 등”이라 한다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.</u>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</p> <p>② <u>은행은 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 1 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변경되는 약관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에 변경 내용 (신·구조문 대비 표 포함)을 다음 각 호 중 1개(거래처에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3개)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,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 등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.</p> <p>1. 거래처가 신고한 <u>정보에 따른 우편 또는 전자우편(E-mail)에 의한 통지</u></p> <p>2. 거래처가 신고한 <u>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, MMS)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전 동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</u></p> <p>3. <u>거래처와 약정한 별도의 전자기기(애플슈 등)에 의한 통지</u></p> <p>4. <u>거래통장에 표기</u></p> <p>5. <u>현금자동지급기/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(이 경우 큰 문자를 사용하고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한다)</u></p> <p>6. <u>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</u></p> <p>③ <u>제 2 항에도 불구하고,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수정 등 단순한 문구 변경(상호·명칭 등)인 경우는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의미의 명확화</p> <p>약관변경 통지방법 변경</p> <p>통지수단 추가</p> <p>통지수단 추가</p> <p>5호 3호로 변경 2호 4호로 변경 3호 5호로 변경</p> <p>4호 6호로 변경</p> <p>&lt;신설&gt; 단순변경 통지불요</p>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④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1 항의 <u>게시</u>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.</p> <p>④ 제 3 항의 <u>게시</u>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 22 조 약관적용의 순서 ~ 제 25 조 위법계약의 해지 &lt;생 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&gt; 이 약관은 2022.08.18 부터 적용합니다.</p>	<p>④ 제 1 항의 게시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 1 항의 <u>게시일</u> 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한다.</p> <p>⑤ <u>제 4 항의 게시일</u>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 22 조 약관적용의 순서 ~ 제 25 조 위법계약의 해지 &lt;좌 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1&gt; 이 약관은 2008.02.01 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2&gt; 이 약관은 2009.10.01 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3&gt; 이 약관은 2015.09. 01 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4&gt; 이 약관은 2016.06. 07 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5&gt; 이 약관은 2016.12.30 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6&gt; 이 약관은 2019.08.26 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7&gt; 이 약관은 2021.03.25 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8&gt; 이 약관은 2022.08.18 부터 적용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9&gt; 이 약관은 2023.05.11 부터 적용합니다.</p>	<p>의미명확화</p> <p>의미명확화</p> <p>시행일 추가 (이하동일)</p>